

건설산업은 한정된 공간에 많은 인력과 장비가 동시에 투입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작업이 고층 또는 지하 등 취약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사망 등 중대재해가 빈발하여 막대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건설재해로 인한 사망자수는 11월말까지 총 산재사망자 2천3백18명중 6백22명으로 나타나 건설업은 제조업과 함께 산재다발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전문건설은 건설현장의 최일선에서 재해위험에 전면노출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보다 많은 시간과 경비를 투자하여 반복교육을 실시하므로써 근로자 스스로가 안전수칙을 준수하게끔 하지 않도록 유도해 나가야 하겠다.

■ 재해발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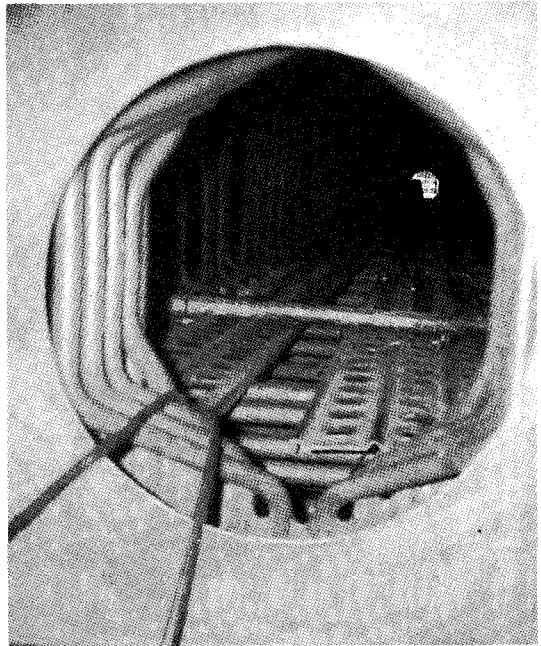
[가] 개요

'93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장 163, 152개소에 종사하는 근로자 6,942,527명 중에서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자가 90,288명이 발생(사망 2,210명, 부상 86,665명(신체장애 29, 932명), 직업병 1,413명)하였다.

'92년도에 비하여 사업장소는 5.38% 증가하였고 근로자수는 1.65%가 감소하였으며, 재해자수는 15.96%가 감소하였고, 재해율도 0.22% 포인트가 감소되어 '83년 이후 계속 감소추세를 유지하였다.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직접손실액(산재보상금 지급액)은 872,53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6.34% 감소하였고, 직·간접손실을 포함한 총 경제적손실추정액은 4,362,65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6.34%가 감소하였으며, 근로손실 일수는 46,834,563일로 전년대비 7.3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재해의 현황과 정책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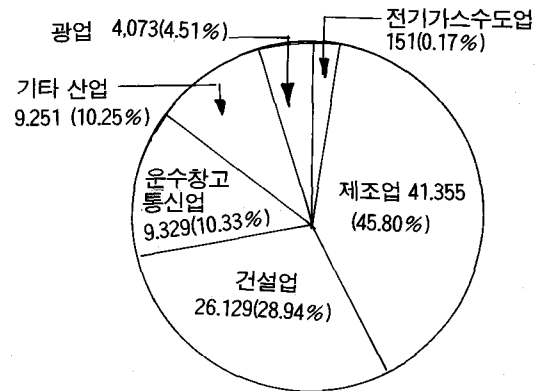
건설재해의 현황과 정책방향

연도	적용 사업 장수	대상 근로 자수	재해자수					재해 ²⁾ 율 (%)	경제적손실추정액 (단위: 백만원)			근로 ⁴⁾ 손실 일수
			계	사망 ¹⁾	부상	신체 장해자	직업병		계	산재 보상금	간접 ³⁾ 손실액	
'92	154,820	7,058,704	107,435	2,429	103,678	33,569	1,328	1.52	4,657,820	931,564	3,726,256	50,574,148
'93	163,152	6,942,527	90,288	2,210	86,665	29,932	1,413	1.30	4,362,655	872,531	3,490,124	46,834,563
증감 ⁵⁾ (%)	8.332 (5.38)	△116.177 (△1.65)	△17,147 (△15.96)	△219 (△9.02)	△17,013 (△16.41)	△3,637 (△10.83)	85 (6.40)	△0.22 (△14.47)	△295.165 (△6.34)	△59,033 (△6.34)	△236.142 (△6.34)	△3,739.585 (△7.39)

* 참고

- 1) 사망자수는 재해당시의 사망자수에 요양중 사망자수를 포함한 것임.
- 2) 재해율 = $\frac{\text{재해자수}}{\text{근로자수}} \times 100$
- 3) 간접손실: 하인리히 방식에 의하여 직접손실액(산재보상금 지급액)의 4배로 계상
- 4) 근로손실일수: 신체 장해자의 등급별 손실일수 + 사망자 손실일수 + 부상자·직업병자의 요양일수
- 5) 증감 = $\frac{\text{'93년도}}{\text{'92년도}} \times 100 - 100$
- 6) '93노사분규참가 근로자 근로손실일수 1,308천일보다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36배
- 7) '93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차질액 20,872억 원보다 산업재해로 인한 총 경제적 손실 추정액이 2.1배임.

업종별 분포로는 제조업이 전체재해의 45.80%로 가장 높고 다음은 건설업이 28.94%, 운수·창고·통신업이 10.33%, 기타산업이 10.25%, 광업이 4.51%, 전기·가스·수도업이 0.17% 순으로 나타났다.



[나] 산업별 현황

산업별로 전년 대비 건설업이 27.93%, 광업이 16.96%, 제조업이 13.16%, 전기·가스·수도업이 9.04%, 운수·창고·통신업이 5.77% 감소한 반면, 기타산업은 7.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	전산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수도업	운수·창고·통신업	기타 산업
'92	107,435	4,905	47,624	36,255	166	9,900	8,585
'93	90,288	4,073	41,355	26,129	151	9,329	9,251
증감(%)	△15.96	△16.96	△13.16	△27.93	△9.04	△5.77	7.76

* 기타산업은 임업, 어업, 농업이 포함된 것임. ('91. 7. 1부터 산재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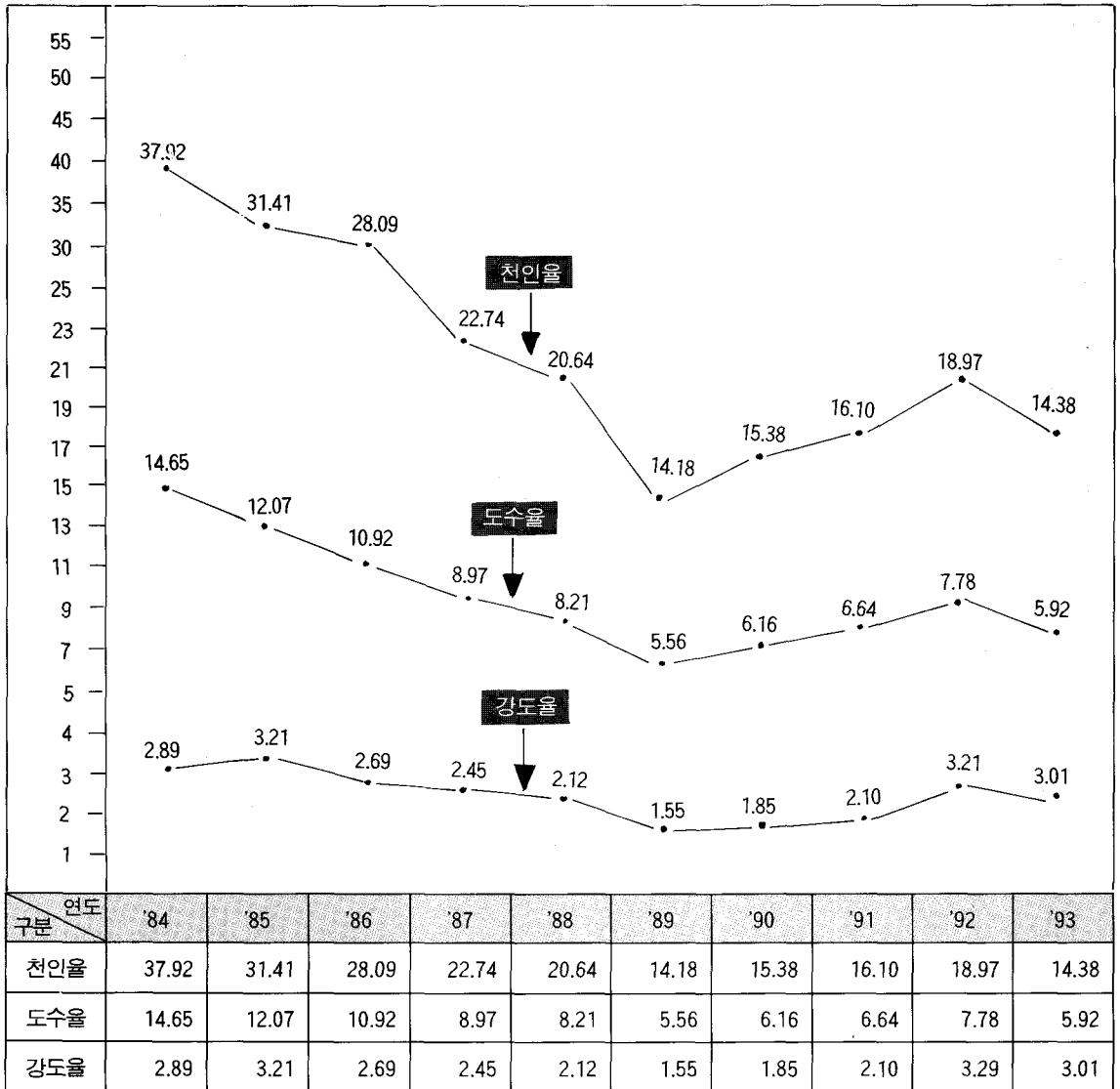
[다] 건설업

① 천인율은 14.38로서 '92년도 18.97보다 감소하였다.

② 도수율은 5.92로서 '92년도 7.78보다 감소하였다.

③ 강도율은 3.01로서 '92년도의 3.29보다 감소하였다.

④ 천인율, 도수율, 강도율 모두가 '92년 이어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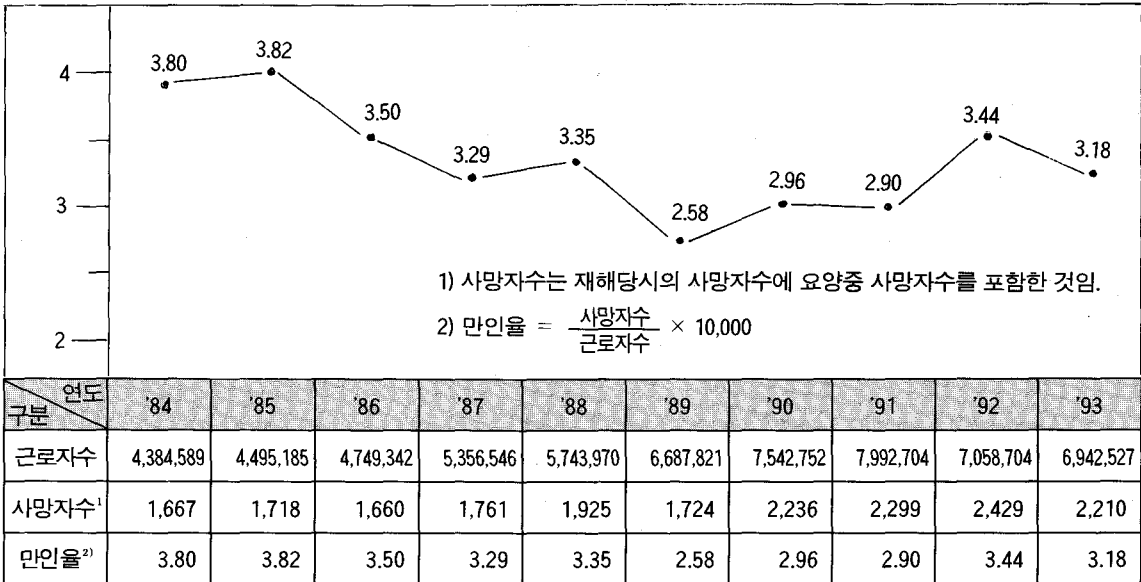
■ 사망재해발생 현황

'93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장 163, 152개소에서 발생한 사망재해는 2,210명으로 만인율은 3.18이며 '92년도에 비하여 0.26포인트가 감소하였다.

만인율(근로자 10,000명당 사망자수)의 추세는 '84년도부터 '85년까지는 점차적으로 증가, '86년부터 '87년까지는 감소하는 경향으로 나타

나다 '88년도는 '87년보다 약간 증가, '89년도는 2.58로 현저하게 감소하였으나, '90년도는 2.96으로 '89년도에 비하여 증가한 추세이며, '91년도는 다시 2.90으로 '90년도에 비하여 다소 감소하였으나, '92년도는 다시 3.44로 '91년도에 비하여 18.62% 증가한 추세이며, '93년도는 3.18로 '92년도에 7.56% 감소한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건설재해의 현황과 정책방향



산업별 사망재해의 분포는 전체 사망자수 2,210명중 건설업이 28.78%로 가장 많고, 제조업이 26.24%, 광업이 15.88%, 운수·창고·통신업이 14.34%, 기타산업이 14.16%, 전기·가스·수도업이 0.59%로 나타났다. 산업별 만인율은 광업이 77.41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운수·창고·통신업이 5.25, 건설업이 3.50, 전기·가스·수도업이 2.44, 기타산업 2.31, 제조업 1.89로 나타났다.

구분	전산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수도업	운수·창고·통신업	기타산업
근로자수(명)	6,942,527	45,344	3,066,846	1,816,892	53,250	603,882	1,356,313
사망자수(명)	2,210	351	580	636	13	317	313
구성비(%)	100.0	15.88	26.24	28.78	0.59	14.34	14.16
만인율	'92	3.44	66.72	1.88	4.44	1.85	5.67
	'93	3.18	77.41	1.89	3.50	2.44	5.25
	증감	△7.56	16.02	0.53	△ 2	31.89	△7.41

* 기타산업은 임업, 어업, 농업이 포함된 것임
(91. 7. 1부터 산재적용)

[가] 규모별 사망재해 현황

업종	규모	총계	규모									
			10인미만	10~15인	16~29인	30~49인	50~99인	100~199인	200~299인	300~499인	500~999인	1,000인이상
건설업소계	근로자수	1,816,892	93,172	116,025	179,197	150,076	174,238	167,502	102,044	127,922	155,011	551,705
	사망자수	636	80	45	68	42	52	69	29	46	51	154
	만인율(%)	3.50	8.59	3.88	3.79	2.80	2.98	4.12	2.84	3.60	3.29	2.79
	분포	(28.78%)										
일반건설	근로자수	1,696,336	89,227	111,996	171,891	143,175	163,990	151,896	93,425	116,832	143,502	510,402
	사망자수	568	64	44	60	40	44	56	24	43	46	147
	만인율(%)	3.35	7.17	3.93	3.49	2.79	2.68	3.69	2.57	3.68	3.21	2.88
	분포	(25.70%)										
공사(갑)	근로자수	1,120,556	4,945	10,029	17,306	11,001	10,248	15,606	9,619	11,090	11,509	41,303
	사망자수	10	1	1	1	1	1	1	1	1	1	1
	만인율(%)	0.89	1.99	5.78	9.09	9.09	9.76	6.41	1.10	0.90	0.87	2.44
	분포	(0.49%)										

일반건설 공사(을)	근로자수	63,291	3,668	3,662	6,503	5,190	6,803	7,320	3,074	3,235	3,994	19,842
	사망자수	23	11	1	6	0	0	1	1	0	1	2
	만인율(%)	3.63	29.99	2.73	9.23	-	-	1.37	3.25	-	2.50	1.01
	분포	(1.04%)										
중간설공사	근로자수	45,451	245	263	648	1,158	3,134	7,483	4,627	5,753	6,405	15,735
	사망자수	41	5	0	1	2	8	12	4	2	4	3
	만인율(%)	9.02	204.08	-	15.43	17.27	25.53	16.04	8.64	3.48	6.25	1.91
	분포	(1.86%)										
철도또는 도신설공사	근로자수	11,814	32	104	155	553	311	803	918	2,102	1,110	5,726
	사망자수	4	0	0	1	0	0	0	0	1	0	2
	만인율(%)	3.39	-	-	64.52	-	-	-	-	4.76	-	3.49
	분포	(0.18%)										

[나] 연령별 사망재해 현황

총계	연령	총 계	18세미만	18~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세이상
건설업소계	636(28.78%)	0	37	62	158	53	75	251	
일반건설 공사(갑)	568(25.70%)	0	34	50	139	49	68	228	
일반건설 공사(을)	23(1.04%)	0	1	5	10	2	2	3	
중간설공사	41(1.86%)	0	2	6	8	2	5	18	
철도또는 도신설공사	4(0.18%)	0	0	1	1	0	0	2	

[다] 발생시기별 사망재해 현황

구분	월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망 자수	636	26	41	48	42	43	52	73	57	45	56	59	94	
비율 (%)	100	4.1	6.4	7.5	6.6	6.7	8.2	11.5	9.0	7.1	8.8	9.3	14.8	

[라] 발생요일별 사망재해 현황

구분	요일	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사망자수	636	83	99	105	90	107	90	62	
비율(%)	100	13.0	15.6	16.5	14.2	16.8	14.2	9.7	

[마] 발생시간별 사망재해 현황

구분	시간	계	0~2시	2~4시	4~6시	6~8시	8~10시	10~12시	12~14시	14~16시	16~18시	18~20시	20~22시
사망 자수	636	6	3	9	69	111	100	99	134	80	16	9	
비율 (%)	100	0.9	0.5	1.4	10.8	17.5	15.7	15.6	21.1	12.6	2.5	1.4	

[바] 발생형태별 사망재해 현황

발생형태	구분	사망자수	비율(%)
계		636	100
추락		319	50.2
전도		24	3.8
총돌		36	5.7
낙하·비래		41	6.4
붕괴·도괴		37	5.8
협착		35	5.5
감전		53	8.3
폭발·파열		10	1.6
화재		15	2.3
무리한동작		9	1.4
유해물접촉		5	0.8
기타		52	8.2

■ 건설업 안전관리 추진상의 문제점

[가] 무리한 공기단축

특히, 공공발주 공사의 경우 예산회계상의 적성으로 인하여 회기내 예산집행이 강요되고 이로 인하여 일시에 많은 인원과 자재, 장비를 집중 투입시키고 있어 인력의 합리적인 통제 안전시설 및 안전점검의 철저를 기할 수 없는 실정이다.

[나] 하도급으로 인한 안전관리의 불충분

대부분의 건설공사는 하도급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나 재해발생에 대한 보상책임을 원청에서 지지않기 때문에 원청은 안전관리에 소홀하게 되고 영세기업 하청은 도급금액 만으로는 공사내용을 처리하기에도 급급한 실정이어서 안전관리에는 손을 못쓰고 있는 실정이다.

[다] 단기고용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의 불철저

건설업 재해자의 90.3%가 입사 근속기간 6개월 미만이고, 56.6%가 동종업무 근속기간 6개월 미만인 것으로 분석될 만큼 신규입사 또는 작업내용 변경자에게 재해가 다발하고 있다. 재해원인을 분석해보면 건설재해자의 경우 안전교육 미흡으로 인한 원인이 6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이 일용직인 건설 근로자에게는 안전교육의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 공사설계자의 가설재에 대한 인식부족

건설재해의 60% 이상이 비계, 동바리 등 가설기자재에 기인되어 발생하고 있으나 지하철 등 대규모 구조물의 가설재를 제외하고는 설계기술자의 공학적인 검토없이 현장기술자의 경험적 방법에 의존하는 경우가 허다하며, 앞으로 비계 등 가설기자재에 대하여도 공사전 설계를 실시하고 사전에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마] 건설기계의 안전관리 미흡

건설공사가 대형화, 중량화되면서 크레인, 리프트 등 건설기계의 사용이 빈번하게 되는데 아직도 면허체제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여러 기종에 무면허 취급자가 많으며 특히, 건설기계를 임대하여 사용할 경우 임대회사로부터 건설기계와 운전자가 현지에 파견되어 작업을 수행하는 형태가 되므로 건설현장책임자와 임대책임자 양쪽으로부터 통제를 받지 않는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바] 기타

건설근로자의 고령화, 근로자의 안전의식부족, 계절별 공사집중화에 따른 문제점, 건설기자재 수급의 불균형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들 수 있다.

■ 정부의 재해예방 대책

[가] 재해예방 지도감독의 강화

(1) 준법풍토조성

앞으로 제정된 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아래 준법 풍토조성에 역점을 두고 45개 지방노동관서의 산업안전감독관을 최대한 활용, 사업장의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중대한 범위반시설의 발견시는 사업주는 물론 그 위반자가 근로자라 할지라도 강력히 위법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완전보건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므로써 근로자에게 현저한유해 또는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업주에게 기계기구 설비 및 원재료의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고 근로자를 사망케 하는 중대 재해를 발생시킨 공사관계자를 구속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그러나 산안법의 준수에 무리가 있는 법조항이 있다면 법 개정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지킬 수 있는 법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다.

(2) 건설현장 지도감독 강화

도급순위 50위까지 대형건설업체의 안전조치, 교육실태, 안전관리비 사용실태 등 총괄적인 안전보건실태와 각 업체별 재해율을 조사, 그 결과를 발표하고 불량업체에 대하여는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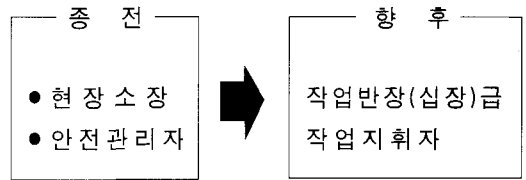
재해다발 건설현장 350개소에 대하여는 지방사무소로 하여금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불량한 사업장은 작업중지, 사용중지 또는 관계자 입건 등 강력 조치하여 유해·위험 건설현장 800개소에 대해서는 안전공단에서 전문기술진을 투입하여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신도시 조성사업과 지하철·전철공사에 대하여는 참여업체의 재해율을 매반기별로 분석하여 불량업체에 대한 기술지도를 강화하고 미숙련 근로자의 안전교육을 위한 순회전시실을 운영토록 하며, 분당 및 일산 신도시개발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공단의 기술지도사무소를 적극 활용, 재해예방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킬 것이다.

아울러 재해예방 우수업체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한 산재예방시설자금융자액을 대폭 증액하여 장기처리(연6%, 3년거치 7년상환조건)로 융자하는 등 투자를 촉진해 나갈 예정이다.

(3) 건설작업반장 교육강화

공사금액 10억원 이상 현장의 작업반장 22,000여 명을 대상으로 전국 주요지역별로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지금까지는 재해예방지도의 주대상을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등으로 하여 이들에 대한 안전의식은 일정수준까지 올라와 있으나 현장 근로자를 직접 지휘하는 작업반장(십장)급에 대한 교육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4) 무재해 3대 실천운동의 확산

작업환경에 따른 위험요인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관리는 근로자의 정신운동으로 전개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가장 근본적인 3대 실천과제를 선정, 전국 건설현장에 전파하고 이를 반드시 지키도록 할 것이다.

“보호구착용”, “작업전 안전점검”, “정리정돈”

① 작업시작전 3분 교육실시

무재해 추진요원 교육을 받은 작업반장이 매일 오전, 오후 작업시작전 3분간은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하였다.

그 내용은 보호구 착용 및 정리정돈 실시, 작업장 위험요인 및 제거,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 확인 등이다.

② 실천운동의 전개

공사금액 10억원 이상 전국현장(5,000개소)에서 동시에 무재해 실천운동을 전개하는데, 무재해 3대 실천운동을 인쇄한 현수막, 표지판 등을 공사장내 일정 작업구역(건물 1개동)마다 부착하고 이를 생활하도록 한다.

그 행동지침으로는 근로자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개인보호구인 “안전모”, “안전대”를 반드시 착용토록 하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대 걸이줄” 등 부대시설을 완비토록 하며 십장등 관리감독자는 작업장 주위의 정리정돈을 책임지도록 한다.

근로감독관 및 안전공단직원에게 지역담당제를 실시하여 그 이행상태를 수시확인하며 행정지도 및 사법처리를 병행할 예정이다.

[나] 기업의 자율안전관리의 추진

산업재해예방에서 사업주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일찌기 안전 제1, 품질 제2, 생산 제3을 주장하여 경영난에 허덕이던 US-STEEL사를 세계적인 철강회사로 이끌어낸 미국의 게리(Gary) 사장의 성공사례를 굳이 들지 않더라도 사업주와 고락을 같이하는 근로자의 인명을 중시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간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수없이 들을 수 있다.

산업재해는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물론 기업에도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것으로, 사업주는 재해발생을 운명론적 당위성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천재지변을 제외한 98%의 재해가 예방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기업내에서 안전제일의 풍토를 조성하여 근로자와 그 가족의 불행을 사전에 예방하여 기업자신과 국가에 이익됨을 깊이 새겨 재해예방에 과감한 투자를 계속해 나가야 되겠다.

산업재해로 인한 연도별 경제적 손실액

(단위 : 억원)

'87	'88	'89	'90	'91	'92	'93
12,060	14,849	18,465	26,968	35,075	46,578	43,626

(1)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 정착 유도

사업장의 안전관리는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개정법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수와 자격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일제점검을 통해 선임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여 미션임이나 무자격자 선임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 선임된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도 엄격히 실시하여 법령준수 의무와 전문성을 제고시켜 나가는 한편, 사업주가 실시하는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도 차질없이 이루어 지도록 할 계획이다.

공사규모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수

공사 규모	안전관리자 선임수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또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	1인
50억원이상 또는 300인 이상	2인(상공금액 500억원이 추월 때마다 1인증가)

(2) 원·하도급업체간의 협력체제 유지

건설업의 특성상 대부분의 작업이 수차에 걸친 하도급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원·하도급 업체간 안전관리협조체제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원청회사에서는 현장소장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 현장의 각 하도급업체간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토록 하고 하도급업체에도 필요한 안전관리자를 배분하여 주어야 함은 물론 하도급업체 소속근로자들의 안전시설 설치요구를 수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원·하도급업체간 책임

- 원도급업체 책임(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의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지원
 - 기타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 하도급업체의 책임(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 하도급자는 사업주로서의 안전상의 조치책임이 있음

[다] 근원적인 안전성의 확보

(1) 적정한 공사기간의 확보

건설업은 그 특성상 대부분의 작업이 옥외에서 이루어지고 공정의 진행에 따라 작업환경이 수시로 변하여 재해의 위험성을 사전에 예측하기가 대단히 어려우며, 작업자체도 지상 수십미터에서의 고도건설, 중량물 최고건설, 대형건설기계의 운용 등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위험한 작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기간, 공사비 등 제반조건이 발주자의 의견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

안이 요청된다.

'93년에 발생한 중대재해의 발생형태를 제조업과 비교해 보면 건설업에서는 추락, 낙하물에 의한 재해가 50%를 초과하고 있다.

최근들어 건설재해가 급증하고 있는 요인중에는 건설자재와 기능인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지연된 공사납기를 지키기 위하여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상당수이다.

이와 같은 재해를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발주자가 시공자의 입장에서 서서 현장의 자연조건, 건설자재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확보하여 줌으로써 시공자가 서두르지 않고 안정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게 하고 이것이 가장 우수한 품질의 공사목적물을 완성할 수 있는 방안임을 발주자에게 주지시켜 충분한 공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촉구하고 있다.

(2) 공사감독·감리자의 안전업무 촉진

건설관계법에 따라 대부분의 건설현장에서 감독 또는 감리자가 지정되어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독을 하거나 일정기간마다 방문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감독 또는 감리자의 업무내용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3) 안전관리비의 적정지급 및 사용지도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라 건설공사를 지정할 때 발주자는 공사진행중 근로자의 안전보건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계약금액에 계상하도록 되어있다.

공사중요 및 규모에 따라 공사금액의 약 0.9~3%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비는 안전시설의 설치, 안전교육의 실시 등 각종 안전보건활동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비용인 만큼 관계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계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시공자에 지불된 안전관리비가 원래의 사용목적이 아닌 타목적으로 불법 사용되거나 미사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4) 사전안전성 심사제도의 정착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기계·기구로서 잠재위험이 높고 대형재해발생가능성이 많은 크레인, 리프트 등에 대하여는 설계·완성 또는 정기검사를 엄정히 실시할 것이다.

높이가 31m를 초과하는 건축물, 지간길이가 50m를 초과하는 교량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사전에 안전성을 검토하여 착공케하는 건설공사의 사전안전성 평가제도를 철저히 시행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전이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나] 기타 건설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1) 건설업체 산재보험 개별요율제도

재해예방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사업주가 재해예방을 추진함으로써 일정한 이익이나 손해를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나, 산재보험의 경우 현재 건설업은 각 업체별 안전관리의 양·불량을 불구하고 매년 일정요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사업주가 안전관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업체 산재보험개별요율제도” 도입을 건설공제조합의 '92. 1. 26 심포지움 주제로 선정, 각계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여 보험요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재해율을 보험율을 산출하는 개별효율제도를 93. 12. 27일 개정하였다.

(2) 우수시공업체 지정시 안전관리 평점강화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우수시공업체 지정시 반영하는 안전관리평점을 현행의 5점에서 10점으로 상향 조정해 주도록 건설부에 요청하였다.

(3) 재해다발업자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

예산회계법에 따라 “공중에 위해를 가한 자”를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는 제한기간이 최소 2년 6월 이상이어서 제재를 가하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하여 사고의 경중에 따라 제한기간을 1월~1년으로 개정해 주도록 재무부에 요청하였다.